

신기술·특허공법(합성형라면) 선정공고
질의사항 답변서

접수번호 #1

질 의 서

공 고 명 :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공사 신기술 · 특허공법
(합성형 라멘교 공법)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

질의자	회 사 명		접수번호	1
	성명/직급		접수일시	
	연 락 처		설계사회신일	

[질의내용]

- 원당1교와 원당교 모두 한 개 업체로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?
- 각 교량별로 1개 업체가 선정된다면 제안서를 교량별로 제출해야 하지않나요?
- 각 교량의 형고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?
- 원당1교의 형고는 시점측 및 종점측 횡단면도에 1.0m로 표기되어 있는데, 원당교의 시점측, 종점측 횡단면도에 나타난 EL 값이 원당1교와 같습니다
- 원당1교의 형고를 EL 값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려 해도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.

[설계사 검토 및 답변내용]

- 원당1교와 원당교 모두 한 개 업체로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?
- 원당1교와 원당교는 시공의 효율성 및 시공 중 관리 편의를 고려하여 한개의 업체로 선정할 예정
- 각 교량의 형고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?
- 원당1교는 하천이 아닌 용수로로써 H.W.L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 협의 시 제시한 용수로 관리수위(2.2m)이상 확보 하는 것으로 관리수위(EL= 7.560m)이상만 확보 필요
- 원당교는 계양천(지방하천) 통과 교량으로 H.W.L(EL=8.460m) 기준으로 여유고 0.8m이상 확보 필요

① 발주처 :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(유선 032-260-5742)

② 설계사 : (주)삼안 (유선 02-6488-8410)

③ 질의사항은 8/3(월)까지 이메일(seajs@ih.co.kr)로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및 게시(8/6)예정이며, 홈페이지 게시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 귀책사유에 해당함

접수번호 #2

질 의 서

공 고 명 :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공사 신기술 · 특허공법 (합성형 라멘교 공법)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				
질의자	회 사 명		접수번호	2
	성명/직급		접수일시	
	연 락 처		설계사회신일	

[질의내용]

○ 신기술 · 특허공법 선정 제안요청서 16p

3) 접근성 평가(3점)

① 제안자가 인천광역시 관내 등록업체 또는 관내업체와 협약체결 유무
- 단, 공법과 무관한 관내업체와 협약을 맺을 경우 인정불가

- ‘공법과 무관한 관내업체’의 의미가 무엇인가요?
 예를 들어, 해당 공법과 관련이 있는 강구조물 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과 같은 건설업종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를 말하는 것인가요?

○ 신기술 · 특허공법 선정 제안요청서 32p

(서식6) 공사비

① 상기 서식에서 ○ 단위시공단가의 기준이 구조물 연장(m) 당 공사비로 산정되어 있는데, 일반적으로 교량의 단가는 연장×폭원으로 산정하는바 원당1교(24×34.5) 및 원당교(40×34.5)로 하여 면적당 공사비(m2)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지 판단바람

[설계사 검토 및 답변내용]

○ 신기술 · 특허공법 선정 제안요청서 16p

- 관내에 제안자의 신기술이나 특허를 직접 개발하고 법적 권리를 가진 원천 보유업체(전용실시권을 이전받은 업체)만을 인정하며, 공법의 권리나 전문성이 전혀 무관한 관내 업체와의 협약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

○ 신기술 · 특허공법 선정 제안요청서 32p

- 면적당 공사비(m2) 변경하여 산정

① 발주처 :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(유선 032-260-5742)

② 설계사 : (주)삼안(유선 02-6488-8410)

③ 질의사항은 8/3(월)까지 이메일(seajs@ih.co.kr)로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및 게시(8/6)예정이며, 홈페이지 게시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 귀책사유에 해당함

접수번호 #3

질 의 서

공 고 명 :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공사 신기술 · 특허공법 (합성형 라멘교 공법)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				
질의자	회 사 명		접수번호	3
	성명/직급		접수일시	
	연 락 처		설계사회신일	
[질의내용] - “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안요청서”의 첨부서류에 명시된 지반침하 수치해석자료는 상부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자료가 아닌데, 이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필수 제출하여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				
[설계사 검토 및 답변내용] - 지반침하 수치해석 및 첨부자료는 불필요				
① 발주처 :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(유선 032-260-5742) ② 설계사 : (주)삼안(유선 02-6488-8410) ③ 질의사항은 8/3(월)까지 이메일(seajs@ih.co.kr)로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및 게시(8/6)예정이며, 홈페이지 게시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 사 귀책사유에 해당함				

접수번호 #4

질 의 서

공 고 명 :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공사 신기술 · 특허공법 (합성형 라멘교 공법)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				
질의자	회 사 명		접수번호	4
	성명/직급		접수일시	
	연 락 처		설계사회신일	
[질의내용] ○ 원당1교 CAD 도면파일 요청 - 원당1교는 곡선 평면선형에 위치하며 시·종점부별 사각 조건이 적용되어 있어, 정확한 거더 평면배치와 거더별 제작길이 및 간격 산정을 위하여 원당1교 종평면도 등 관련 CAD 파일 제공을 요청드립니다. [설계사 검토 및 답변내용] ○ 원당1교 CAD 도면파일 요청 - 설계에 필요한 원본 CAD 파일 배포 ① 발주처 :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(유선 032-260-5742) ② 설계사 : (주)삼안(유선 02-6488-8410) ③ 질의사항은 8/3(월)까지 이메일(seajs@ih.co.kr)로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및 게시(8/6)예정이며, 홈페이지 게시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 귀책사유에 해당함				

접수번호 #5

질 의 서

공 고 명 :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공사 신기술 · 특허공법 (합성형 라멘교 공법)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				
질의자	회 사 명		접수번호	5
	성명/직급		접수일시	
	연 락 처		설계사회신일	
[질의내용] 1.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고한 「공고 제2026-0209호」의 신기술 · 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제안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. ----- 아 래 ----- 가. 정성평가 칼라사진 및 색채사용 여부에 대해 질의입니다. 2_신기술 · 특허공법_제안요청서(합성형라멘) / V 제안서 작성방법 등 / □ 제안서 작성방법(p12) / 나. 정성평가 제안서 / 7) 본문 : “색채 및 내용구성 제한이 없으며”로 명시되어 있으나, VI 제안서 평가기준 / □ 감점기준(p17)에는 “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(칼라사용 금지)”로 명시되어 있는바 칼라사진 및 색채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.				
[설계사 검토 및 답변내용] ○ 정성평가 칼라사진 및 색채사용 여부에 대해 질의입니다. - 정성평가 제안서를 포함한 정량평가 등 각종 첨부서류는 모두 흑백으로 작성 및 제출				
① 발주처 :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(유선 032-260-5742) ② 설계사 : (주)삼안(유선 02-6488-8410) ③ 질의사항은 8/3(월)까지 이메일(seajs@ih.co.kr)로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및 게시(8/6)예정이며, 홈페이지 게시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 귀책사유에 해당함				

접수번호 #6

질 의 서

공 고 명 : 장제로 기능개선 및 확장공사 신기술 · 특허공법 (합성형 라멘교 공법)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				
질의자	회 사 명		접수번호	6
	성명/직급		접수일시	
	연 락 처		설계사회신일	
[질의내용] ○ 원당1교 평면선형에 의한 도면 원본 배포 여부 - 제출자료 목록에 도면이 있는데 원당1교는 평면선형이 직선이 아니어서 도면원본이 있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. 캐드도면 배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				
[설계사 검토 및 답변내용] ○ 원당1교 평면선형에 의한 도면 원본 배포 여부 - 설계에 필요한 원본 CAD 파일을 배포				
① 발주처 :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(유선 032-260-5742) ② 설계사 : (주)삼안(유선 02-6488-8410) ③ 질의사항은 8/3(월)까지 이메일(seajs@ih.co.kr)로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 및 게시(8/6)예정이며, 홈페이지 게시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 사 귀책사유에 해당함				